「강릉원주대학교 비교과 활동 졸업인증 운영 규정 」 일부개정(안) 검토의견서

학과명 : 정보통신공학과 / 직위 · 성명 : 현광민 / 전화번호 : 010-6620-0303

개 정 안	검 토 의 견	
	수 정 안	사 유
제4조(인증기준)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학사운영 규정 제88조제3항제7호에 의한 졸업인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 단, 이로 인해 학점을 부여받거나 학과별 졸업요건인 경우는 제외한다.	제4조(인증기준)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학사운영 규정 제88조제3항제7호에 의한 졸업인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 **단, 이로 인해 학점을 부여받거나 학과별 졸업요건인 경우는 제외한다.** **"단, 이로 인해 학점을 부여받거나 학과별 졸업요건인 경우는 제외한다."을 삭제**	졸업요건/학점의 부여와 인증은 개념이 다르고 병립을 해도 무방할 것이다. 인증이란 기준 이상의 비교과 활동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학점이 부여거나 졸업 요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만큼의 비교과 활동을 수행한 것이고 그만큼의 만족스런 결과를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.